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

(재일 2014-2) 일부개정예규(안)

1. 개정이유

○ 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차량번호, 전화번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실명 처리 방식을 변경하여 판결서 등의 가독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

○ 판결서 등의 별지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차량번호, 전화번호 등에 대한 비실명 처리 방식을 비실명 처리하는 정보의 성격을 나타내는 대체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(안 제8조)

○ 별지에 대한 비실명 처리에서 해당 내용이 없어도 판결서 등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대한 지장이 없는 등 이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의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도록 변경함(안 제9조)

○ 시행일 : 2021. 8. 16.

3.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(재일 2014-2)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재판예규 제 호 2021. . . 결재

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(재일 2014-2) 일부개정예규(안)

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(재일 2014-2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전문 중 “원칙적으로”를 “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”라고 한다.

제8조제1항,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차량번호, 전화번호, 계좌번호, 신용카드번호, 인터넷 주소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생략하고, 해당 부분에 생략되었음을 표시하는 방식(생략한 명칭이 여럿일 경우에는 명칭 다음에 1, 2, 3 등을 부가하여 표시하고, 이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‘생략’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)으로 비실명 처리한다.

<예시>

* 피고인은 경기 24너1234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⇒ 피고인은 (차량번호 생략)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
* 피고인의 저축은행 계좌(311-04-351101)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⇒ 피고인의 저축은행 계좌(계좌번호 생략)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

② 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비실명 처리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.

<예시>

* 공소외 김호동(820807-1143337)에게 전달하여 ⇒ 공소외 V(주민등록번호 생략)에게 전달하여

제9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 해당 내용이 없어도 판결서 등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대한 지장이 없는 등 이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의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예규는 2021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 (비실명 처리의 방식) ① 비실명 처리 대상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알파벳 A, B, C, D, E 등으로 중복되지 않게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.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많을 경우 AA, AB, AC, AD, AE 등으로 두 개 이상의 알파벳 대문자를 겹쳐 사용할 수 있다. ② · ③ (생 략)	제5조 (비실명 처리의 방식) ① ----------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-----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 (차량번호, 전화번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실명 처리 방식) ① 차량번호, 전화번호, 계좌번호, 신용카드번호, 인터넷 주소 등은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. 〈예시〉	제8조 (차량번호, 전화번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실명 처리 방식) ① 차량번호, 전화번호, 계좌번호, 신용카드번호, 인터넷 주소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생략하고, 해당 부분에 생략되었음을 표시하는 방식(생략한 명칭이 여럿일 경우에는 명칭 다음에 1, 2, 3 등을 부가하여 표시하고, 이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'생략'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)으로 비실명 처리한다. 〈예시〉

* 피고인은 경기 24너1234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⇒ 피고인은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	* 피고인은 경기 24너1234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⇒ 피고인은 (차량번호 생략)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
* 피고인의 저축은행 계좌(311-04-351101)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⇒ 피고인의 저축은행 계좌(M)로 송금받아 편취하고	* 피고인의 저축은행 계좌(311-04-351101)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⇒ 피고인의 저축은행 계좌(계좌번호 생략)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
② 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.	② 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비실명 처리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.
<예시>	<예시>
* 공소외 김호동(820807-1143337)에게 전달하여 ⇒ 공소외 V에게 전달하여	* 공소외 김호동(820807-1143337)에게 전달하여 ⇒ 공소외 V(주민등록번호 생략)에게 전달하여
제9조(별지에 대한 비실명 처리) 판결서 등의 별지에 기재된 사건관계인의 정보도 판결서 등의 본문과 동일하게 비실명 처리한다. 다만 판결서 등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별지 자체를 삭제할 수 있다.	제9조(별지에 대한 비실명 처리) ----------. 다만 해당 내용이 없어도 판결서 등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대한 지장이 없는 등 이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의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	
연 락 처	(02) 3480-1578